아르바이트 노동상담 사례 분석, 알바 노동자들의 현실과 대안 모색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Ⅰ. 문제의식과 시작

○ 알바노조의 노동상담 사례 분석 자료는 현재의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위법적·탈법적·편법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기본적인 근로계약 미체결은 물론이고 임금체불(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간외 근무와 휴일휴가 미적용, 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미지급, 사회보험 미가입, 부당해고까지 지난 10여년간 문제시된 노동 각 영역들이 모두 확인되고 있음.

○ 그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가 여론조사 기관이 양적 지표(설문조사) 형태에서만 제기되다가 이제는 청년 주체들의 단체(알바노조, 청년유니온)들이 출현하면서, 자생적인 노동실태들이 조사되고 있음. 이번 알바노조 노동상담 사례 내용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라기보다, 왜(why?)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타나고 있음에도 해결이 안 되는지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주는 것임.

Ⅱ. 상담사례 주요 내용

○ 알바노조의 노동상담 자료는 2013년 8월 8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진행된 온-오프라인 상담 내용을 정리한 것임.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청년유니온도 노동상담을 진행한 자료들이 있어, 이 글에서는 두 노동단체의 사례 조사 내용 중 동일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음.

〔그림1〕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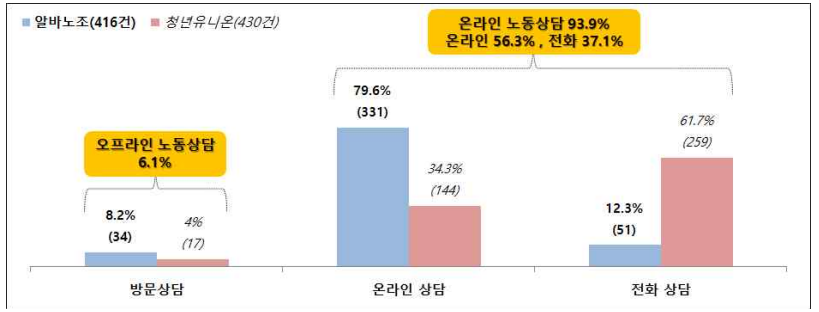

* 자료 : 알바노조 노동상담 실태조사 자료 발제문(박종만, 2015.4.1.) 재구성
청년유니온 불랙기업 실태조사 발제문(정준영, 2015.3.25.) 재구성

〔그림2〕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유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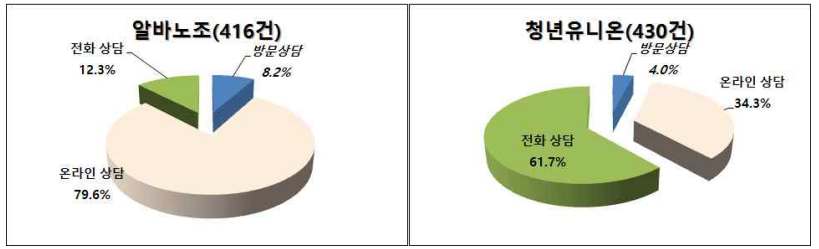

주 : 1) 알바노조 노동상담 : 2013년 8월 8일 ~ 2014년 10월 21일 상담 기간 내역 분석
2)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 2014년 3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상담 기간 내역 분석

○ 알바노조(416건)와 청년유니온(430건) 노동상담은 포괄적인 온라인 상담이 93.9%(온라인 56.3%, 전화 37.1%)로, 오프라인 상담(6.1%)에 비해 거의 절대 다수의 상담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 두 단체의 상담 유형의 차이점은 온라인 상담은 알바노조(79.6%, 청년유니온 34.3%)가 높고, 전화상담은 청년유니온(61.7%, 알바노조 12.3%)이 높은 상황임([그림1], [그림2]).

○ 두 노동단체의 상담 유형별 내용을 보면, △임금 체불(52%), △채용과 계약(21.4%) 내용이 전체 상담 10건 중 7건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노동상담 대부분 채용과 계약은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한 문제인데, 이는 다시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고용 이후 법률적 다툼(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으로 연결된 사례가 대부분임([표1]).

〔표1〕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유형 현황

상담 내용	두 단체의 상담내용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세부 내용	청년유니온 세부 내용
채용계약	21.4%	(394)	229	165	근로계약서 미작성 149건, 미교부 17건, 해고 28건	해고/사직 65건, 인사명령 10건, 인턴 16건
임금	52.0%	(956)	760	196	체불 318건, 주휴수당 146건, 최저임금 105건, 가산임금 99건 등	체불 87건, 주휴수당 84건, 최저임금 25건 등
노동조건 (시간, 휴가)	7.2%	(133)	46	87	꺾기 10건, 휴게시간 36건 등	초과 근로 39군, 휴일 휴가 48건 등
사회보험	4.5%	(82)	57	25		
퇴직금	4.5%	(82)	35	47		
불쾌한 언행	1.0%	(19)	12	7	폭언폭행, 성희롱 12건	폭언폭행, 성희롱 7건
기타	9.5%	(174)	90	84		
계	100.0%	(1,840)	1,229	611		

주 : 1) 알바노조 노동상담 주제별 내역은 중복 내용 포함 건수
2)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주제별 내역은 중복 내용 미포함 건수

〔표2〕 정부의 최저임금 사업장 실태조사 감독결과 : 2010-2013(단위 : 개, 건)

구 분	감독 업체수	위반 업체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과태료→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 조치	사법 처리	과태료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년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년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장감독 결과 원자료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 - 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제2항) 등

○ 결국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노동상담 사례 분석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정부가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노동문제를 해결의 핵심 방향은 주요 영역 중 '근로계약'(체결 및 교부)과 '임금체불'(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보다 기존의 법제도를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수가 감독 업체의 약 최소 1/3, 최대 1/2 가량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정책적 수단(시정조치 →사법처리)을 강화해야 함.

Ⅲ. 주요 정책 과제들

○ 먼저, 우리 사회에서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보편적 노동인권이 향유 될 수 있도록 단기적·중장기적인 모색 방안이 제도와 정책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라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가. 법제도 준수 및 모니터링

– ① 고용관계상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다툼의 기초가 되는 '근로계약서면체결 및 교부'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현재의 근로계약 준수를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적어도 상습 악성 위반 사업장은 상시적 지도감독과 점검 이후 과태료와 사법처리 병행 → 정부 급여명세서 의무화 입법 추진][1]

*** 모범 사례 - 프랑스**

- 배달, 조리 등 음식/외식업 아르바이트 유니폼/작업복 개선(세탁: 사업주 역할)

-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샘플 온라인 앱 제공

[참조] 프랑스 아르바이트 노동조건 제도화 상황 사례

a) 최저임금계산기(SMIC) **b) 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자료 : http://www.salairebrutnet.fr
주 :프랑스 최저임금계산기(SMIC,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1) 2013년 9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입법안(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제도화해야 함. 개정안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산정의 내역을 근로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임금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적도록 하고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② 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사원제도'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10% 감액문제(보증금과 교육비 등 위법적 근로계약과 관행)나 과도기적 노동(인턴, 실습)문제가 알바노조와 청년유니온 조사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조치&과태료 병행 필요.[2)]

[참조] 미국 최저임금 주별 상황 비교 지도(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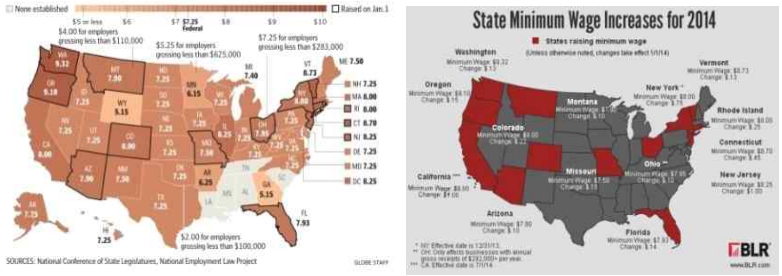

③ 아르바이트생 임금 착취(?)의 대표적인 '꺾기'나 '조퇴' 등의 근로시간 임의조정 문제를 정부가 근절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하루 매출 전표 정산 시 시제(돈)이 맞지 않을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대납하는 '외상처리'나 '제품 강요'도 근절 방안 필요. 더불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떠나지 못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자유권 박탈'과 '고의적(?) 체불' 문제도 근절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 있음.

나. 아르바이트 노사 당사자 요구사항

- 아래는 2014년 12월 서울지역(신촌·홍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김종진)에서, 아르바이트 정책으로 필요성과 요구도가 높은 항목들임.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용주와 아르바이트 노동자 의견차이가 확인되나, 대체로 실태조사와 교육은 공통된 요구도가 확인됨. 다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법률/상담 지원 체계에 대

2) 근로기준법 제16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 1항)

한 필요성이 1순위였으며, 법 위반 고용주 처벌이 요구도 2위를 차지했음.

① 서울시 정책 필요성 (필요성 의견 상위 순위, 100점 만점 기준)

'정책 필요도' - 아르바이트 의견	'정책 필요도' - 고용주 의견
① 침해 사례 신고, 무료 상담/법률 지원 체계 구축(77.3점) ② 청년 무료 검진(75.9점) ③ 알바 현장 관리·감독 모니터링 강화(74.4점) ④ 좋은 알바 지역 조성(73.6점) ⑤ 권리보호 홍보물, 매뉴얼 보급(73점)	① 청년 무료 검진(69.6점) ② 사업주/근로자 대상 노동인권교육(54.9점) ③ 알바 현장 정기적 실태조사(50점) ④ 침해 사례 신고, 무료 상담/법률 지원 체계 구축(49.7점) ⑤ 권리보호 홍보물, 매뉴얼 보급(47점)

② 서울시 정책 요구(요구도 상위 의견 순위)

'서울시 정책요구' - 아르바이트 의견	'서울시 정책요구' - 고용주 의견
① 아르바이트 정보제공과 알선(22.2%) ② 부당대우 고용주 엄격한 처벌(22%) ③ 주변 부정적 시선, 의식 개선 캠페인(11.4%) ④ 사업주·아르바이트 교육(10.4%)	① 사업주·아르바이트 교육(27.1%) ② 아르바이트 정보제공과 알선(20.1%) ③ 좋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홍보(16.2%) ④ 법준수 우수 기업 인센티브 등 혜택(15.2%)

- 한편 아르바이트 노동문제 공유와 상황인식을 위한 홍보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서 필요도와 요구도에서 높은 의견으로 나타남. 따라서 정부(중앙/지방)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1차 홍보와 교육, 사업 배치를 통한 정책개선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상태임. 예를 들어 아래는 2014년 12월 서울지역(신촌·홍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김종진)인데, 아르바이트 고용/사용주들이 정부의 아르바이트 홍보나 캠페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확인됨.

□ 아르바이트 정책캠페인, 사업 인지도

- 고용/사용주 104명 조사 결과 '캠페인 인지도' : 모름 76%(정부 사업 :고용노동부 사업 13% , 서울시 사업 11% 정도 알고 있음)
- 아르바이트 1,000명 조사 결과 '노동권익 상담 기관 인지도' : 모름 58.1%
  [마포 63.1%, 서대문 52.6%, 여성 57.4%, 남성 58.9%]
  ⇨ **적고, 현재 학교 재학 중이고, 사업체 규모가 작고, 교대제 일수록 노동권익 상담 기관에 대해 모르는 비율 높음**

□ 고용사용주 노동법률 접근 상태

① 홍보물 접근 상황

- 홍보물 접촉 77.7%(마포 72%, 서대문 79.2%)
  [사업체 규모가 크고, 사업운영 기간이 길수록 홍보물 접촉 빈도 높음]
- 홍보물 접근 경로 정부기관 38.3%(마포 2.1%, 서대문 44.3%)

② 노동교육 이수 상황

- 노동법률 교육 이수 70.6%(마포 64%, 서대문 72.7%)
  [사업체 규모가 크고, 사업운영 기간이 짧을수록 교육 빈도 높음]
- 노동법률 교육 경로 가맹본부 40.3%(마포 43.8%, 서대문 39.3%)
  [사업체 규모와 사업운영 기간별 차이가 크게 없음
  ⇨ 정부 기관 노동법률 교육 이수 11.1%(마포 12.5%, 서대문 10.7%)

〔그림 3〕 정부 아르바이트 캠페인/사업 및 노동권익 상담기관 인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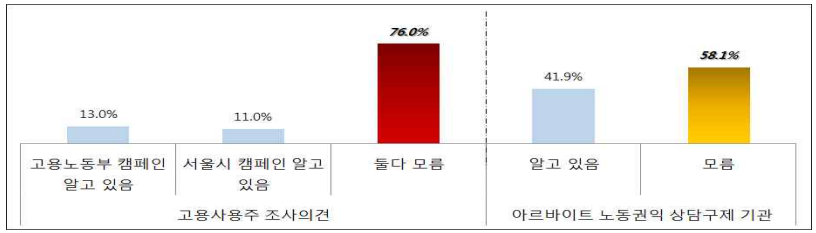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지역 고용사용주 노동법률 관련 홍보물 접촉 및 접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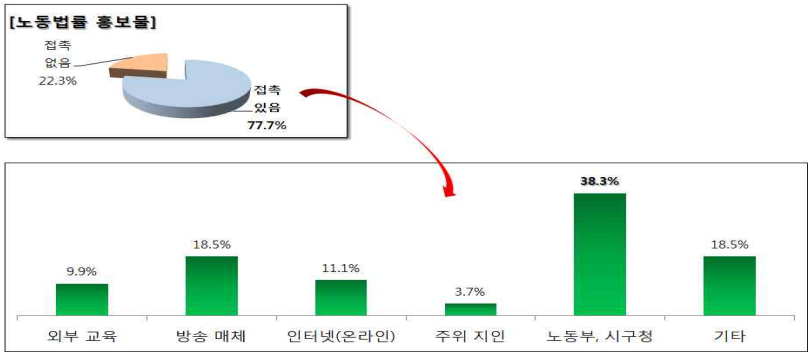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지역 고용/사용주 노동법률 관련 교육이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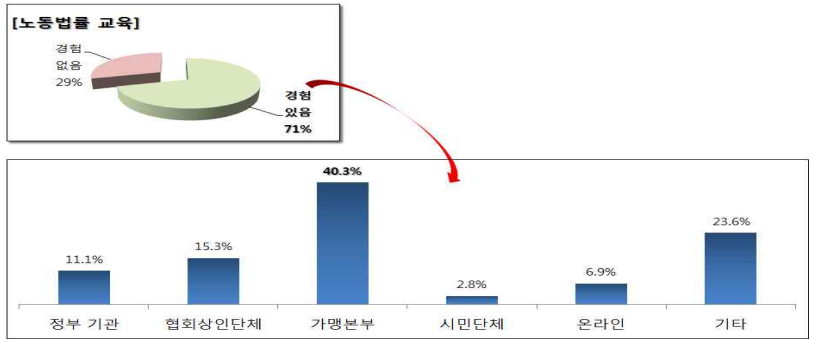

〔참조〕 고용노동부 관계법령 중점 점검사항

중점 점검항목	점 검 사 항
①근로조건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67조, 기간제법 17조)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명시 여부 –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등
②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등 모든 금품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 ● 근로시간과 관련한 연장 및 야간수당, 기타 금품지급 여부 – 청구일 이전 1년간의 퇴직자 명부, 임금대장, 상여금대장 출퇴근관리부, 계좌이체내역 등
③임금 및 최저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최저임금법 제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전액불, 2) 정기불, 3) 통화불, 4)직접불 이행 여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확인서 확인, 필요시 연소자와 개별면담 ● 최저임금('14년 5,210원)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④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⑤취직 인허증 (근로기준법 제64조)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5세 미만인자(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자 포함)가 근로할 경우 취직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 확인
⑥연소자 증명 (근로기준법 제66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비치 여부 – 근로자명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⑦근로시간 및 야간 근로·휴일근로 제한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0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일 7시간, 1주 40시간, 연장시 1일 1시간, 1주 6시간 초과 여부 (18세 미만자)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 연소자 동의와 인가여부